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3년 11월 27일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상수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3년 11월 15일 (금)

나.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3. 행정건설위원회 회부일자

2013년 11월 19일 (화)

4. 관련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142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용)

5. 개정이유

통합관리기금의 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원인 여유자금에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예수금을 포함하고, 기금 용도에 일반회계로 전출을 신설하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장치등을 마련하고자 함.

6. 주요 개정내용

가. 통합관리기금의 재원인 여유자금 정의를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에서 ‘각종 기금 등의 여유자금’으로 변경함(안 제1조).

나. 여유자금의 종류를 ‘일반회계,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 및 예수금 등’으로 확대함(안 제4조).

- 다. 기금의 용도에 일반회계에 대한 융자내용을 신설함(안 제6조).
- 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촉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의2, 제9조의3).
- 마.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함.

7. 검토의견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지방세수 여건이 악화되고, 인건비와 복지 사업비 등의 경직성 경비 증가로 세입대비 세출요구 규모가 상회하는 등 구재정이 어려움에 따라 통합관리기금 여유자금의 융통성 및 효율 극대화로 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금 재원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추가하고, 기금 용도에 일반회계에 대한 융자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에서 통합관리기금의 정의를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한 기금’에서 ‘기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한 기금’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를 신설하여 통합관리기금의 재원을 ‘일반회계,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으로 확대하였음.

안 제6조제2호에서는 통합관리기금의 용도를 ‘타기금 및 주차장 등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자금의 융자’에서 ‘다른 기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자금의 융자’로 변경하여 특별회계뿐만 아니라 일반회계에도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고,

안 제9조의2와 제9조의3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와 해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기타 한글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상 용어를 정비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구별 통합관리기금 운영 현황

(2013.9.24.현재, 일반회계 전입 규정 등재 구(6) : 강동,구로,노원,도봉,서초,성동)

연번	구 별	행정전화	기금의 재원	비 고
1	마 포	3153-8500	1. 다른 기금의 여유자금에서 예탁금 자금 2. 타기관, 단체로부터 출연 예탁금 3. 통합관리기금 융자금의 상환 및 이자수익금 4. 기타 수익금	
2	강 남	3423-5473	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2. 통합관리기금 융자금의 상환수입금 및 기금의 운영으로 인한 수입금 3. 기타 수입금	
3	강 동	3425-5393	1. 다른 기금,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부터의 예수금 2. 통합관리기금 융자금의 상환수익금 및 이자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4	관 악	879-5566	1. 일반회계출연금 2. 타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의 50%이상 4.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등	
5	구 로	860-3397	1. 개별 기금으로부터의 예탁금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통합관리기금 융자금의 상환 및 이자수익금 4. 그 밖의 수익금	
6	노 원	2116-3163	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탁금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다른 기관·단체로부터의 출연·예탁금 4. 통합관리기금 융자금의 상환수입금 및 기금운용수입금 5. 그밖의 수입금	
7	도 봉	2091-2616	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탁금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다른 기관·단체로부터의 출연 예탁금 4. 통합관리기금 융자금의 상환 및 이자수익금 5. 그 밖의 수익금	

연번	구별	행정전화	기금의 재원	비고
8	동대문	2127-4081	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통합관리기금 용자금의 상환금 및 기금운용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9	서초	2155-6383	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통합관리기금 용자금의 상환 및 운용이자 등 수입금 4. 기타 출연금 및 수입금 ※ 구청장은 통합관리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중 일정액을 통합관리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10	성동	2286-5167	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예수금 3.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용자금의 상환수입금 및 기금 운용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11	송파	2147-2420	1. 통합기금의 재원은 각각의 개별기금으로 조성한다.	
12	영등포	2670-3052	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통합관리기금 용자금의 상환수입금과 기금의 운영수입금 4. 법 제17조의 제1항에 따른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부터의 차입금 5. 그밖의 수입금	

관계법령 및 근거

■ 지방자치법

-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로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제16조(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별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